

#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(위생교육) 위반으로 2025년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0일

파 주 시



- 제 목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- 법적근거: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(위생교육) 및 같은 법 제22조(과태료)
- 공고기간: 2026. 7. 10. ~ 2026. 7. 26.
- 공고대상 및 내역

연번	업종	업소명	영업자	소재지	처분 사유	처분내용
1	세탁업	(주)경기산업	원**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길 113, 가동, 나동	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	과태료 부과 20만원
2	건물위생 관리업	(주)서정매니지먼트	서**	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국원말길 46-4, 지1층		
3	피부미용업	드보라코스메틱	이**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5, 한라아파트 205호		
4	피부미용업	아람뷰티	임**	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혜음로 166-4, 1층		

## 5. 고지사항

- 위의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6. 8. 13.(목)까지 우리부서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신 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과태료에 가산금 등 부과됩니다.
- 행정처분(과태료)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, 「지방세기본법」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사항: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(☎ 031-940-853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